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31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1월 22일

나. 발 의 자: 김현진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4년 1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4. 1. 31.)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학용 의원)

□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이 정의와 용어를 정비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관련 용어의 정비(안 제2조)

나. 강서구청장의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의무화(안 제12조)

다. 평생학습관 이용자의 수강료 감면 기준 변경(안 제1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협조부서: 교육지원과

다. 입법예고(2024. 1. 22. ~ 2024. 1. 27.)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가. 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학습관 이용자의 수강료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등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
- 안 제12조는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근거」를 기존 임의(“할 수 있다”)규정에서 강행(“하여야 한다”)규정으로 변경하여 강서구청장의 평생학습 증진의 책무를 강화하였음
- 안 제18조의2는 다자녀 수강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어 보다 많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 이용자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관내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여 강서구청장의 평생학습 진흥 의무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기존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 모에서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부, 모(자녀 중 한 명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로 기준을 완화하여 프로그램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 이는 2022년도 기준 합계출산율¹⁾이 0.78명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 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 ~ ’25)²⁾」에 따른 조치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됨

1) 합계출산율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15세에 해당하는 한 여성이 가임기간이 끝나는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22년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 ~ ’25년)

(추진방향)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가구특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생활·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여건 마련. 특히,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아동 1인당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특별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